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재·부품·장비기업 침해사고 시 신고의무 부과〉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30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29.
3. 회 부 일 : 2025. 9.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하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을 공격하는 소위 ‘우회 해킹’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와 같은 소재·부품·장비기업에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신고의무가 없어 핵심 정보 보호 및 침해 사고 대응에 취약한 상황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기업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 산업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기업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2(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

현행	개정안
	<u>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침해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보안시스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등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은 소재·부품·장비 등 전후방산업의 기술수준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해당 첨단전략산업의 핵심기술 뿐 아니라 직접 관련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기술에 대해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음.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면서도 해킹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개정안에 따라 국가첨단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기업에 침해사고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간접적 침해를 방지하여 핵심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2025년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는 산업기술의 범위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추가하는 내용¹⁾으로 「산

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의결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는 산업기술의 범위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핵심전략기술이 포함되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해당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²⁾,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해야 함³⁾.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아. (생략)

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전략기술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13. (생략)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라서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⁴⁾, 수출·해외인수·합병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⁵⁾ 기술침해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를 적용받게 됨.

산업통상부는 개정안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제도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산업기술 침해신고제도가 내용상 중복된다는 점,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가 넓어 선의의 피해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 심사시 정부조직법(법률 제20289호) 시행(2025.10.1.)에 따라 개정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460